

# 부 산 고 등 법 원

## 제 6 민 사 부

### 판 결

|           |                                       |
|-----------|---------------------------------------|
| 사 건       | 2019나50000 구상금등 청구의 소                 |
| 원고, 피항소인  | A 주식회사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하                         |
|           | 담당변호사 최병주                             |
| 피고, 항소인   | H                                     |
| 제 1 심 판 결 | 부산지방법원 2018. 11. 8. 선고 2017가합47355 판결 |
| 변 론 종 결   | 2019. 4. 18.                          |
| 판 결 선 고   | 2019. 5. 9.                           |

###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1. 청구취지

가.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제1심공동피고 D(이하 'D'이

라고 한다) 사이에 2017.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7. 4. 25. 접수 제17573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 피고와 D 사이에 2017. 3. 28. 체결된 근저당권설정계약과 2017. 4. 20. 체결된 매매계약을 각 취소하고, (2)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제1심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의 2018. 1. 15.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의하면, 원고는 위 각 근저당권설정계약과 매매계약에 대하여 80,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할 것을 구하고 있으나, 그 청구원인에 따르면 위 부동산 자체의 가액이 위 금액에 이름을 전제로 위 각 계약 전부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로 보인다).

##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하고,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피고는 청구취지 나.항 기재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에 따른 가액배상 청구 부분에 대한 예비적 항소취지로서, 위 매매계약을 42,124,5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금액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취지로 변경할 것을 구하나, 이는 피고의 예비적 상계 항변이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주위적 항소취지의 불복범위를 일부 감축한 것에 불과하여, 독립된 항소취지로 보기 어렵다).

## 이 유

###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1) 이 법원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피고와 D 사이의 이 사건 제1, 2매매계약이 주식회사 B의 사업계속을 위하여 부득이 체결된 것이라거나 정당한 대물변제로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을사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배척하고, (2) 제1심판결 이유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거나,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새로운 주장에 대한 판단을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 2.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판결문 15면 9행 내지 10행의 "원고가 그 매매계약의 취소를 구하고 있는 이상"을 "달리 이 사건 제3설정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지에 따라 동일한 당사자가 체결한 후행 이 사건 제2매매계약에 대한 원고의 사해취소청구의 결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도 없는 이상"으로 고쳐 쓰고, 같은 면 10행 말미의 "할 것이다" 다음에 "(대법원 2013. 5. 9. 선고 2011다75232 판결 등 참조)"를 추가한다.

○ 제1심판결문 17면 9행의 "37,875,500"을 "37,875,500원"으로, 같은 면 12행의 "피고 Y"를 "피고 H"로 고친다.

## 3. 피고가 이 법원에서 한 상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주식회사 B와 D에 대하여 운송료 미수금 채권 등 37,875,000원 상당의 채권을 가지고 있으므로 위 채권으로써 이 사건 제2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 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그러나 채권자취소권은 채권의 공동담보인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

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채무자의 일반재산으로부터 일탈된 재산을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환원시키는 제도로써, 수익자로 하여금 자기의 채무자에 대한 반대채권으로써 상계를 허용하는 것은 사해행위에 의하여 이익을 받은 수익자를 보호하고 다른 채권자의 이익을 무시하는 결과가 되어 위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 따라서 수익자인 피고가 원상회복으로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에게 가액배상을 할 경우 피고 자신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채무자인 D 등에 대한 채권자라는 이유로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기의 채권과의 상계를 주장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대법원 2017. 8. 21.자 2017마499 결정 등 참조).

피고의 항변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한다.

재판장            판사            윤강열

                  판사            최봉희

                  판사            최    환

## 부동산의 표시

### 1. [1동의 건물의 표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AE에 있는 AF아파트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5층 점포 및 아파트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지하층 AL호 철근콘크리트조 판매장 12.07㎡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창원시 마산회원구 AE 대 1320.2㎡

[대지권의 표시]

소유권대지권 132020분의 131

### 2. 경상남도 창원군 AH 답 2939㎡. 끝.